심 사 보 고 서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0

2022. 9. 19.(월)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2년 9월 7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9월 8일

라. 상정일자 : 2022년 9월 19일

-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두환 행정국장)

가. 제안사유

○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기 이전 부서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함으로써 우리 도 자치법규의 정합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여성가족정책관(또는 여성정책관)에서 양성평등가족정책관으로 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 (안 제1조~제10조)

-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 충청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 충청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

○ 사회적경제과에서 소상공인정책과로 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 (안 제11조)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서정호)

○ 금번 제정조례안은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기 이전의 부서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개정함으로써 도 자치법규의 정합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여성가족정책관(또는 여성정책관)의 명칭이 양성평등가족정책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 10건에서 인용된 명칭을 변경하고,
- 둘째, 사회적경제과의 명칭이 소상공인정책과로 변경됨에 따라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에서 인용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 금번 제정조례안은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부서 명칭이 인용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다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관련 규칙이 개정되지 않은 바, 금번 조례의 공포일에 맞추어 관련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정책관”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으로 한다.

제2조(「충청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으로 한다.

제3조(「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여성정책관”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으로 한다.

제4조(「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으로 한다.

제5조(「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으로 한다.

제6조(「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2호가목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으로 한다.

제7조(「충청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으로 한다.

제8조(「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으로 한다.

제9조(「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복지여성분과의 부서란 중 “여성정책관”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으로 한다.

제10조(「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의 개정)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여성정책관”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으로 한다.

제11조(「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분야별란 중 “사회적경제과”를 “소상공인정책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여성정책관을 포함하여 경제·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5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 3. (생 략) ④ ~ ⑦ (생 략)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양성평등가족정책관----------.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2. 충청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 략) ③ 여성가족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 3. (생 략) ④·⑤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양성평등가족정책관----------. 1. ~ 3.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3.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여성정책관이 된다. ③·④ (생 략)	제15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③·④ (현행과 같음)

4.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행정부지사, 보건복지국장, 여성가족정책관은 당연직으로 한다. 2. ~ 9. (생 략) ③ ~ ⑦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2. ~ 9.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5.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정책관이 된다. ③·④ (생 략)	제3조의2(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양성평등가족정책관--. ③·④ (현행과 같음)

6.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②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정책복지위원회 가. 여성가족정책관, 기획관리실, 보건복지국, 충북도립대학교,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 바. (생 략) 3. ~ 6. (생 략) ③ (생 략)	제30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 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 ---------- 나. ~ 바.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7. 충청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②(생 략)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학교자치과장, 충청북도경찰청여성청소년과장,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 3.(생 략)	제3조(구성) ①·②(현행과 같음) ③ ----------양성평등가족정책관----------. 1. ~ 3.(현행과 같음)

8.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운영위원회) ①·②(생 략)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여성가족정책관, 원장으로 한다. ④ ~ ⑨(생 략)	제6조의2(운영위원회) ①·②(현행과 같음) ③ ----------양성평등가족정책관----------. ④ ~ ⑨(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발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보좌기관)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대변인을 둔다.

② 행정부지사 밑에 감사관 및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을 둔다.

③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도지사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특별보좌관을 두며, 정책특별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양성평등가족정책관) ①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

1. ~ 32. (생략)

제10조(경제통상국에 두는 과) ① 경제통상국에 경제기업과, 투자유치과,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정책과 및 국제통상과를 둔다.

② 경제통상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경제기업과장·일자리정책과장·소상공인정책과장·국제통상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투자유치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⑤ (생략)

⑥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5. (생략)

⑦ (생략)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4항제1호

○ **사　유**

- 본 조례안은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기 이전 부서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